

경 영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제2항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동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

-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

2. 공시내용

- 대 상 : 상무 이정우 등 12명
- 경 위 : 대출금이자 과다 수취 사고
- 주요내용 : 상무이정우(감봉1월), 상무방승국(감봉1월), 상임이사 김영태(견책), 상무이동복(견책), 상무최홍균(견책), 상무김현수(견책), 조합장 장종수(주의촉구), 상무이윤길(주의촉구), 차장안병남(주의촉구), 차장문종태(주의촉구), 과장허재영(주의촉구), 과장박경덕(주의촉구), 상무박충서(주의촉구)이상13명.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과다수취 이자금액 177,623,940원 환급 으로 손실처리함.

2013년 1 월 28 일

천안공주낙농농협조합장

